

3.5 학술논문게재료및영문교정료지원에관한시행세칙

제1조(목적)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및 연구원의 해외학술논문 발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원칙)

- (1) SCI(E) 등재 논문지원에 한한다.
- (2) 참여교수가 년 간 1인당 집행할 수 있는 게재료 및 영문교정료 지원한도는 별도로 정한다.
- (3) 신청자가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.
- (4) 지원은 게재료에 한정하며 별쇄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.

제3조(구비서류)

- (1) 영문교정료 지원
 - ① 영문교정비 지원 신청서
 - ② 교정료 청구서
 - ③ 투고논문 사본 1부
 - ④ 투고확인 서류
 - ⑤ 영수증(카드 또는 외화송금영수증)
- (2) 게재료 지원
 - ① 게재료 신청서
 - ② 게재료 청구서
 - ③ 게재 및 발표논문 사본 1부
 - ④ 영수증(카드 또는 외화송금영수증)

(2006.7.제정; 2008.7 제1개정; 2009.6 제2개정)

